

플랫폼택시 옥외광고 신고(심의) 행정절차 간소화(일원화) 제안

□ 제안업체

1. 당사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플랫폼택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빌리티플랫폼사업자로 서울시에서 약 600여대의 고급택시 및 중형택시를 운행하며 시민들의 편안한 이동을 제공하고자 이동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제안배경

1. 택시가 운행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이에 따라 규정된 지자체의 조례 및 개선명령에 따라 신고 및 인허가업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몇년사이에 플랫폼택시가 확대되고 활성화되면서 기존 운송사업자가 진행하여야 하는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플랫폼택시가 위임받아서 중앙부처 혹은 지자체 담당부서와 직접 업무를 처리하며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2. 그러나, 최근 플랫폼택시의 옆면 랩핑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광고상품이나 이를 활용한 프로모션등이 진행되지만, 옥외광고법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거주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의 행정처리에 너무 많은 리소스가 발생하고 있음.
3. 이는 플랫폼택시가 다양한 협업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 플랫폼택시에 속한(계약된) 모든 택시의 등록지 기준 자치구별로 개별 심의를 받고 신고를 진행해야 함을 의미함. 그러나 자치구마다 심의 일정과 방식이 상이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광고에 대해 플랫폼택시와 광고주 간의 빠른 협의가 어려운 구조로 인해 광고주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이로 인해 택시 광고의 매력도가 낮아지고 기사 수입 또한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 최근 광고는 1~2달의 빠르게 광고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효과를 측정하지만, 택시는 옥외광고에 따라 심의신고가 1달~2달이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광고주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상황

□ 제안사항

1. 21년도 이전에는 택시 면허전환이나 신고와 관련한 업무가 옥외광고와 동일하게 각 택시사업자(택시별) 자치구에 신고하거나 택시조합이 대행하여 각 업무처리를 진행하였으나, 21년도 부터 플랫폼택시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플랫폼택시(플랫폼사)가 위임을 받고 직접 서울시에 신고를 대행하면서 빠르게 택시 운행투입이 가능하게 적용된 사례가 있음.
2. 이와 같이 옥외광고 역시 플랫폼사가 계약된 택시의 위임을 받고 서울시나 조합에 직접 신고(심의)를 받아 처리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택시를 통한 광고 및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행정처리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기존	변경
① 플랫폼택시가 광고주와 새로운 광고(래핑)을 진행하는 경우, 택시사업자가 속한 각각의 자치구에 모두 심의를 받고 신고를 진행하여야 함 ② 문제점 - 행정절차의 복잡성(자치구별 심의일정 상이) - 신속한 광고 대응의 어려움 -> 다양한 광고나 협업이 도입되기 어려움	① 플랫폼사에 계약된 택시(택시사업자)의 위임장을 바탕으로 플랫폼사가 직접 지자체(서울시)에 심의 및 신고를 진행함 ② 기대효과 -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일원화 - 지자체 행정부담 경감 > 자치구별 처리 건수 감 - 신속한 광고대응이 가능해져, 택시와 다양한 협업구조가 가능해짐 -> 택시시장의 활성화

□ 기대효과

1. 옥외광고법은 건물 간판 등에 대한 규정이 우선적용됨에 따라 실제 설치된 지역의 자치구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택시의 경우 플랫폼택시가 활성화되고, 플랫폼택시를 기반으로 다양한 광고나 협업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2. 이에 일원화된 행정절차로 인하여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사들의 수익이 증대될 수 있고, 플랫폼사와 다양한 기업체들과 빠른 협업이 가능해져 택시시장의 활성화 및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이동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